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2000. 8. 25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의안 번호	320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9. 8. 31) 및 동법시행령 개정('99. 12. 31, 2000. 7. 1)으로 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행정사무감사시기 :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→ 제2차 정례회의
기간중으로 수정

첨 부

1.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2. 관련법규 발췌 1부
3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"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"을 "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 있어서는 10일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38조(정례회의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개정 '91. 12. 31, '99. 8. 31 시행일 2000. 1. 1]

<동법시행령>

제16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 (개정 2000. 7. 1)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신설 19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72호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감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<u>기간중</u> 10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(이하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2차 정례회의 <u>기간중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